2019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

2019. 6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목 차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포함 중견기업까지 확대 1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3
3.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5
4.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 7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9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11
7.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13
8.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 15
9.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 17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당기소득 차감항목 개선 ····· 19
11.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22
12.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및 감면율 상향 ····· 24
13. 상속세율 완화 ····· 27
14.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29
1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31
16. 가업승계 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34
17.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35
1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37
19.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38
20.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40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포함 중견기업까지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현 행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이하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에 대해 세제 지원

- (중소기업)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 제2호 라목,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중견기업)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만 허용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50%, 중견기업 근로자 소득세 30% 감면* ('21.12.31까지)

  * 조특법 제29조의6, 동법시행령 제26조의6

□ 문제점

○ 중견기업의 재직연수 5년 미만 근로자 비중은 52.2%*로 중소기업(61.0%)**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직률 또한 22.0%*로 높아 핵심인력 양성에 어려움 존재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2017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대기업·공기업 선호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직이 저조*하여, 중견기업 취업 유인책으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필요

** 중견기업의 63.3%가 신규인력 확보에 애로(2017년 중견기업 고용현황실태 조사, 중견련)

○ '16년부터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여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도모하였으나, 기업 세제지원(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인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중견기업의 활용유인이 낮아 가입이 저조하였음. 2018년 개정 세법은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인정 범위는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

<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합계			
	가입 기업(개)		가입 근로자(명)		가입 기업(개)		가입 근로자(명)		가입 기업(개)		가입 근로자(명)	
	'18.3	'19.2	'18.3	'19.2	'18.3	'19.2	'18.3	'19.2	'18.3	'19.2	'18.3	'19.2
수	11,174	15,862	28,743	39,425	9	16	477	494	11,183	15,878	29,220	39,919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9.2

- '18.3월 이후 7개 기업이 신규 가입하며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추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평균 가입 근로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많은 근로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책 필요

- 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활용 유인을 높여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

□ 건의사항

○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납입금 연구·인력개발비 포함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현 황**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증가분방식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8.6%, 4.2년으로 2014년보다 다소 추격하였으나, 같은 추격그룹인 중국에 비해 추격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시급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2014년	2016년	증감	2014년	2016년	증감
한국	78.4	78.6	0.2	4.4	4.2	-0.2
중국	69.7	71.1	1.4	5.8	5.2	-0.6
일본	93.1	92.7	-0.4	1.6	1.5	-0.1
EU	95.5	94.4	-1.1	1.1	1.1	0.0
미국	100.0	100.0	0.0	0.0	0.0	0.0

* 2016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그러나 중견기업의 연구집약도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혁신역량 강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이 필요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16)0.97%→('17)0.81%(2017년 말 중견기업 통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정책자금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과 차등 대우를 받게 되어 자본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또한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음

○ 이에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문턱을 낮추고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각 구간별 중견기업 공제율을 5%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8조 8,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재정학회, 2019.2)

□ 건의사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현행) 중견기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 8% ⇒ (건의) 중견기업 1~3년차 20%, 4~5년차 15%, 6년차 이상 13%

3.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현 황**

○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7%,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문제점**

○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R&D 체질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도모

* 2019년 경제정책방향('18.12.17),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18.3.14)

○ 그러나 중견기업은 미·중 무역분쟁, 환율변동, 신흥국의 추격 및 국내 제조업 불황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3년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신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중견기업 설비투자 여부 : ('15)74.9%→('16)63.6%→('17)61.9%→('18 계획)58.7%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16)0.97%→('17)0.81%(2017년 말 중견기업 통계)

○ 또한, 2016년부터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이 축소(5%→3%)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

-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간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수혜 대상이 넓고 행정 비용이 적어 OECD 회원국 중 27개국(('95)12개국→('04)18개국→('13)27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견기업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투자의 지속성 및 성과 창출 효과가 크며, 중소기업과 달리 인센티브 유형은 자금지원보다 先투자 後지원 형태의 세제지원이 효과적으로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확대가 바람직함

-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에 의해 자체 R&D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 이상 지속

*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20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건의사항

○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공 제 율) (현행) 3% ⇒ (건의) 5%

4.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

□ **현 황**

○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10%,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5%,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19.12.31까지)

□ **문제점**

○ 우리나라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산업현장 인식 개선 및 안전시설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안전시스템 구축 필요

*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

<2015년 주요국가 사망만인율>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영국
사망만인율	0.53%	0.17‰	0.15%	0.35%	0.04%

* 나라지표(www.index.go.kr)

- 사업장 규모별 재해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 및 사망자 수가 두드러진 현상을 보임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

구분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재해자	29,597명	42,929명	6,066명	5,408명	3,145명	2,703명
사망자	416명	732명	190명	245명	283명	91명

* 2017 산업재해통계, 안전관리공단

○ ’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19.1.15)되어 위험의 외주화 제한, 작업 중지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강화 등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연장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조속한 안전시스템 구축 장려

□ 건의사항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6

□ **현 황**

○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7%,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19.12.31까지)

□ **문제점**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0%, 미국의 52.1%, 일본의 79.3%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17년 노동생산성은 32.9달러(PPP적용, 노동시간 기준)*로 OECD 35개국 중 27위로, 2000년 이후 매년 27~31위의 하위권 기록

* 2018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 중견기업은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악화로 인해 최근 3년간 설비투자*가 감소 추세를 보여 설비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중견기업 설비투자 여부 : ('15)74.9%→('16)63.6%→('17)61.9%→('18 계획)58.7%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세제지원으로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나 '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이 축소(5%→3%)

- 제조 중견기업의 32.4%*가 만족도 높은 세제지원으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꼽았으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이 축소된 것을 우려한 기업도 36.7%*에 달함

* 2018 중견기업 세제 실태조사, 중견련 내부자료

○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나아가 제조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이 필요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을 상향(3%→5%)할 경우, 5년간 생산 및 고용·취업을 유발함*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3%→5%)시 경제적 효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25,818	26,664	27,538	28,441	29,373
취업유발인원(명)	8,729	9,015	9,310	9,615	9,931
고용유발인원(명)	6,274	6,479	6,692	6,911	7,138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9.2, 한국재정학회

□ 건의사항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일몰연장) (현행) ’19.12.31까지 ⇒ (건의) ’22.12.31까지

- (공 제 율) (현행) 3% ⇒ (건의) 5%

6.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동법 시행령 제22조의8

□ **현 황**

○ 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6%,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감면('19.12.31까지)

□ **문제점**

○ '15년 바이오산업 수출금액은 4조 2,861억원*으로 지난 5년간 수출금액이 55.9%가 증가하며 차세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 기획재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4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

* 바이오산업 수출금액 : 2조7,494억원('11) → 3조475억원('12) → 3조1,642억원('13) → 3조4,052억원('14) → 4조2,861억원('15)(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19.3.6)

○ 이처럼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바이오산업 종사 기업의 투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중 평균 바이오산업 시설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12.3%가 증가

- 특히,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는 종사자 300명~1,000명 규모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38.6%(('16)12.2억원→('17)29.1억원) 증가

○ 바이오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높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높고 대기업 쏠림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비중의 53%*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일반 제약사 34개 기업 중 27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산업을 주도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비중 : 대기업 13%,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34%(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산업부)

□ 건의사항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일몰연장) (현행) ’19.12.31까지 ⇒ (건의) ’22.12.31까지

- (공제율) (현행) 3% ⇒ (건의) 5%

7.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

□ **현 황**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10%,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7%, 그 외 기업 5%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로 바이오, 로봇,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등

** 적용요건 : ①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액의 2% 이상일 것, ②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또는 신성장동력 관련 최초 등록 특허권 보유, ③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중소기업 제외)

□ **문제점**

○ 중견기업은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50.7%)"**을 응답

* 신산업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반도체 38.1%(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산업부)

** 중견기업 4차 산업혁명 조사, 2017.10, 중견련 내부자료

○ 중견기업의 28.2%*는 관심 투자분야로 신사업 진출을 응답했으며 기업의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매출규모에 따른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관심 비중 : 1조원 이상 48.8%,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43.1%,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34.4% 順(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조특법은 중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세제의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까지 확대할 경우 他 지원과 시너지를 이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8)

□ 건의사항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건의)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8.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현 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18.6.30 당시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인원에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19.12.31까지)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문제점**

○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을 담은 국정과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005만명)의 33.0%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

* 경제활동인구조사(2018.8)

○ 중견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정부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최근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안정되지 않아 고용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여의치 않음

○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중견기업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어 경영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만큼 정규직 전환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 **건의사항**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연장

- (현행) ’19.12.31까지 ⇒ (건의) ’22.12.31까지

9.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 **현 황**

○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과세이연('21.12.31.까지)

- (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주주의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

- (지주회사) 현물출자 받은 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계정조정으로 계상(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

□ **문제점**

○ 주주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액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 과세하는 것은 물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도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액*과 지주회사의 자산조정계정**은 모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상당액으로 그 원천이 동일

*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 – 출자 주식의 장부가액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

○ 이러한 이중과세 방식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하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기업역량을 위축시킴

-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핵심사업을 처분하여, 핵심사업이나 장래성이 유망한 신산업 발굴에 집중하려 하나 현행 세제 하에서는 비핵심 자회사 매각시 주주의 과세이연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

○ 조특법 제38조의2는 '10년 법령 개정 이전에는 과세이연 규정임이 명확하였으나, 동 법령 개정시 과세이연과 이월과세를 혼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초래

- 대다수의 외국에서도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규정만 있을 뿐 이월과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물출자한 주주와 출자받은 법인에게 이중과세하는 사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움

○ 동일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던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적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법령개정('11년, '17년)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모두 해소하였으나 조특법 제38조의2만 다른 조치 없이 유지

*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분할법인만 과세(법인세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 완전자회사 주주·완전모회사 모두 과세→주주만 과세(조특법 제38조)

□ 건의사항

○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이중과세 해소

- 과세이연을 받은 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과세이연의 당사자가 아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처분에 따른 과세 배제

- 이중과세 문제의 완전 해소를 위해 기존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시기 보완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당기소득 차감항목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현 황**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투자, 근로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의 65%(투자를 제외할 경우 15%)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 부과

□ **문제점**

○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혁신성장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 수립 및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며, 특히 중견기업은 영업이익의 92.5%*에 달하는 금액을 설비에 투자**하고 있어 원활한 투자금 확보가 긴요

* 2017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통계청

** 전체 중견기업 평균 설비투자실적 : 55억원, 투자실적 있는 기업 평균 설비투자실적 : 89.7억원(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70.7%*로 높고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유보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여 초기 중견기업 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임

* 중견기업 자금조달원 : <u>내부 유보자금 70.7%</u>, 시중은행 차입 22.7%, 정부정책자금 활용 1.7%, 회사채 발행 1.4% 순(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이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당기소득 차감항목'을 개선하여 투자활동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함

○ 중견기업은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등 신산업을 영위하는 비중이 높아, 신성장동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국내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조특법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각각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기타 시설투자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4차 산업 발전 지향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중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중소 25%, 중견 8~15%, 그 외 기업 0~2%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소 10%, 중견 7%, 그 외 기업 5% / 기타 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소 7~10%, 중견 3~5%, 그 외 기업 1~3%

-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임금증가분 차감시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에 대해 50%, 청년정규직 또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증가에 대해 100%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투자에 대해서도 50% 가중치 반영 필요

○ 또한, 국내 기업의 소득을 환원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당기소득 차감항목에서 제외된 배당을 재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소득환류세제('17.12.31까지 적용)의 경우, 배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소득에서 차감

-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16.0%*로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주요국 배당 성향(배당 총액/당기순이익) : 한국 16.0%, 미국 38.6%, 일본 34.1%, 중국 30.9%, 인도 32.2% 등(NH투자증권, 2019.2)

- 기업의 배당은 내부 유보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므로 배당액을 당기소득 차감항목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의사항**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신성장동력 투자금액에 대해 가중치 적용

- (현행) 투자×100% ⇒ (건의) 신성장동력투자×150%, 일반 투자×10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당기소득 차감범위에 배당금 포함

- (현행) 배당금 제외 ⇒ (건의) 배당금×50%*

*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게 적용

11.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현 황**

○ 조세특례제한법은 최소한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항목에서 제외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9%, 그 외 기업 10～17%

□ **문제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을 받게 되어 연구개발투자 금액의 일부가 감면에서 제외되어 이월공제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

- 최근, 중견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익은 더욱 줄어들 전망

* 개별법인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종전)80%→(현행)60%(중소기업 100%)
연결법인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종전)80%→(현행)60%(중소기업 100%)

○ 지난 3년간 중견기업의 연구집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16)0.97%→('17)0.81%(2017년 말 중견기업 통계)

○ 중견기업의 높은 세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 대기업 17.1%, 중견기업 17.5%, 중소기업 12.8%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9.2

□ 건의사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중소기업⇒(건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포함

12.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및 감면율 상향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현 황**

○ 중소 제조업체 및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중소 50%, 중견 3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19.12.31까지)

□ **문제점**

○ 최근 국내 제조기업은 노동·환경 규제 강화 및 환율변동·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대내외 경영위기에 노출되어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중견련 조사에 따르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 중견기업의 38.3%가 "스마트 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산업별 R&D 연계 등 중견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 추진 중임

* 중견기업 비전 2280, 산업부, 2018.2.5

○ 이처럼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 및 제품 품질저하 우려

- 관세감면 신청기업의 대다수가 로봇,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 제품 수입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사용 제품과의 규격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품질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高사양·高규격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불량률 상승 등 품질 유지에 애로 예상

- 또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74.2%(23개)가 일본 수입품으로 FTA가 적용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기업 활용도가 높은 상황

○ "2018년도 중견기업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총 31개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수혜기업은 2019년에도 관세감면 물품 재신청 의사가 있으며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17년 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실적은 총 11.2억원으로 타 지원정책에 비해 세수부담이 적고, 감면금액에 비해 기업 만족도가 높아 일몰연장시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이 예상됨

사례	A사

-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영위중인 A사는 '17년 현격한 매출신장을 보이며 성장,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중
  * 평택공장 신축 투자 : 208억원('17년), 시스템 생산공장 증설 : 987억원('18년~'20년)

구분	2015	2016	2017
매출액	2,303억원	2,511억원	3,71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	217억원	349억원
종사자수	530명	556명	599명

- 해당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선도함에 따라 제품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이 미흡,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임
- 설비라인 규격화 및 수입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대다수의 설비를 일본 수입품으로 진행하여 제품생산 원가 절감
- 제작공정에 필요한 5개 제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요청하여 '18년 10.5억원의 관세감면을 예상,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사례 2	B사

○ A사는 금속 캔 및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7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으로 4개 물품을 신청·지정되어, '18년 수입한 2개 물품에 대하여 1억 2,50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8월 중에도 기계를 추가 수입할 예정임

- 부탄가스, 스프레이 제품 용기를 제조를 위해 one-stop combination 공정을 구축하여, 전체 공정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없는 상황임
- FTA를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독일, 스위스, 중국이나 관세가 부과되는 일본, 대만 등 전적으로 해외설비에 의존
- '18년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2개 설비는 일본 제품임

○ 강관 업계는 전통적으로 일본 기계가 유명하나 엔화 강세 및 관세 부담으로 인해 일본 기계설비 도입이 어려워 제품 정밀도 향상에 애로가 있었음

- 관세법 개정('14.10.31)을 통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이 중견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여, 처음으로 일본 설비를 공정에 도입하였으며, 한·중 FTA 체결 전인 '16~'17년에 중국 설비를 수입할 때에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아 적극적인 설비투자 촉진에 기여

사례 3	C사

○ B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7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으로 11개 물품을 신청, 8개 물품이 지정되어 '18년 2,400만원을 감면받음, 사드 여파 및 자동차업계 불황으로 인해 투자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5대의 설비를 추가할 계획임

- 감면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B사의 경우 자금계획 수립 시 관세감면 제도가 설비투자 비중 확대에 크게 기여

○ 자동차 부품은 생명과 연계되어 있어 정밀도 확보가 필수적인 업종으로 관세감면을 통해 일본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완성도 제고

- 일본 설비는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있어 안전성 관련 실험 및 데이터가 풍부한 반면 국내설비는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도입시 위험요소 존재, 유럽 등 FTA 체결국 제품도 수입하고 있으나 일본 기술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 건의사항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요청

- (일몰연장) (현행) '19.12.31까지 ⇒ (건의) '22.12.31까지
- (감 면 율) (현행) 30% ⇒ (건의) 50%

13. 상속세율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현 황**

○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5%로 증가

□ **문제점**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최고 실효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

○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 13개국은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경제위축, 국부유출 등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도입하지 않음

- 해당 국가 대부분은 생전에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사망한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등을 통하여 과세하고 있음

상속세 유지 국가 22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 폐지국가 13개국 (상속세 폐지연도)
일본(55%), 대한민국(50%), 프랑스(45%), 영국(40%), 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30%), 독일(30%), 칠레(25%), 네덜란드(20%), 핀란드(19%), 덴마크(15%), 그리스(10%), 아이슬란드(10%), 터키(10%), 폴란드(7%), 스위스(7%), 룩셈부르크(5%), 이탈리아(4%), 헝가리(제3자 18%), 슬로베니아(14%)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이스라엘(1981년), 뉴질랜드(1992년), 포루투갈・슬로바키아(2004년), 멕시코・스웨덴(2005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노르웨이(2014년), 라트비아・에스토니아(상속세 도입하지 않음)

* OECD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국세청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82%('08~'16)로 비교적 적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에서 가족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액에 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상속세 금액과 비중(단위: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국세청 세수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1,863,970
상속세	11,817	12,207	12,028	12,586	17,185	15,865	16,961	19,437	19,949	15,337
	0.75%	0.79%	0.72%	0.70%	0.89%	0.83%	0.87%	0.93%	0.85%	0.82%

* 국세통계연보(해당 연도)

○ 전체 중견기업의 50%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발생 세액은 약 4.4조원이나, 상속세율을 0%로 감면할 경우 자본(7.25%), 고용(3.6%), 생산(8.46%), 실물투자(7.25%)가 모두 증가하며, 법인세 증가로 감면된 상속세액 이상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구분	가업상속세율 50→0%로 인하 시			
	감면세액 (실질 가업상속공제액)	매출 증가액	법인세 증가액	고용 증가인원
중견기업 전체의 50% 가업상속 시	4.4조원	397.3조원	4.5조원	15,253명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50% 가업상속 시	1.6조원	220.3조원	2.6조원	6,262명

*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중견기업연구원, 법무법인 바른, 2016

□ 건의사항

○ 가업승계 상속세율 인하((현행) 50% ⇒ (건의) 25%*)

* OECD 평균 최고 상속세율 26.3%

14.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현 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상속 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 업력 10년 이상 : 2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문제점**

○ 해외 주요국들은 가업상속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직계 비속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2017)>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25%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EY한영, 2018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통한 지속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성장전략 필요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 상장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핵심기술의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장기적인 매출액 증가, 고용인원 확대 등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 발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20년간 기업 경영에 미치는 효과>

구 분	가업상속공제 대상 현 수준 유지 (3천억원 미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1조원 이하)	증가 효과	증가율
매출액	775조원	828조원	**52조원**	6.8%
법인세	17.9조원	18.6조원	**6,816억원**	3.8%
고용량	58,681명	60,451명	**1,770명**	3.0%

* 가업상속공제 인하의 경제적 효과 보도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9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 문제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해외 PEF, 대기업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포기할 경우 인수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해외 PEF, 대기업에 매각되어 중견기업이 축적해 온 기술,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의 해외 유출 및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화 현상이 우려됨

□ 건의사항

○ (공제대상 확대)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건의) 1조원 미만 중견기업

<업력 30년 이상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2017년 결산 기준)>

매출액	1천억 미만	1~2천억	2~3천억	3~5천억	5천억~1조원	1조 이상	계
기업수(개)	373(34.7%)	277(25.8%)	158(14.7%)	138(12.8%)	80(7.4%)	49(4.6%)	1,075
	현행 808개, 75.2%			추가 218개, 20.3%		49(4.6%)	

* 2016년 말 기준 중견기업 통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공제한도 확대) (현행) 최대 500억원 ⇒ (건의) 1,000억원

* 중견기업 평균 상속세 1,185억 추정(중견련, 2013)

1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 **현 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유지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70~100%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사후관리요건 : ① 가업용 자산의 80%를 보유할 것, ② 주된 업종을 유지할 것,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거나 상속 이후 10년간 평균 근로자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20%에 미달하지 않을 것

□ **문제점**

○ 상증세법상 예외가 일부 인정되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종 및 투자대상 변경 금지는 기업 생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실제 기업의 활용이 저조함

* 엄격한 요건으로 해외 대비 이용실적 미미 (한국 62건, 독일 1.7만건)

○ 특히, 우리나라는 '경공업→중공업→전자산업→IT산업'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업종전환에 실패하고 도태

- 1955년 당시 10대 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이었으나, 1970년대 철강, 조선, 전자, 화학, 기계 등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삼호무역, 동명목재 등 장수가 기대되던 여러 유력 기업이 사라짐

사례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 장수기업 업종 전환

□ **다나카귀금속**

- 1885년 전당포 및 환전소로 창업(금융)
- 전당포를 통해 얻은 금을 통해 귀금속 도소매업을 시작
- 20세기에 1g 순금을 두께 0.05mm선으로 3,000m까지 늘리는 금극세선 및 도금 기술 개발
- 이후 휴대폰 진동모터용 브러시 기술, 백금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제 등 개발
- 현재 전자전기부품 제조, 표면처리, 요업, 화학에너지, 환경 등 귀금속 가공 기술을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여 매출액 9,256억 6,230만엔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 후쿠다금속

- 에도·메이지시대부터 병풍, 금사를 제조, 산업 근대화에 따라 담배 포장지 제조
- '20년대 공업용 동박과 알루미늄박 제조
- 태평양 전쟁 이후 군수품 수요가 줄어들자 밀가루·옥수수가루 제조업으로 전환
- 1940년대 전해동박 기술 개발, 이후 1965년 도쿄올림픽시 컬러TV보급 수요 폭증
- 이후 금속분말을 사용한 전자파 차단 도료 등을 지속 개발하여 현재 전세계 휴대폰의 40%에 전해동박 공급, 매출액 527억 700만엔의 중견기업으로 성장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영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10년간 자산 유지 및 업종전환 제한, 고용인원 및 대표이사직 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하여 기업 생존을 저해하는 이율배반적 상황 초래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10년 내에 업종전환이나 자산의 처분,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 환경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이 충족되는 이상 자산유지 요건을 엄격히 관철시킬 필요성이 부족

○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이 추징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후관리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건의사항

○ 기업 운영의 신축성 보장을 위해 사후관리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간의 단축)(현행) 10년 ⇒ (건의) 5년*

  * 독일 : 상속세의 85% 공제시 사후관리기간 5년, 100% 공제시 7년
    일본 : 사후관리기간 5년

- (고용유지 요건 개선)(현행) 근로자 수⇒(건의) 독일식 총급여액 유지

  * 독일 : 85%공제 시 5년간 총급여 400% 유지, 100% 공제시 7년간 총급여 700% 유지)

- (업종 및 자산유지 요건 완화) 업종전환 및 자산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 하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 완화

16. 가업승계 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 **현 황**

○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주식(상장, 비상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물납요건 :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②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 **문제점**

○ 상속 및 증여재산은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구성되어 상속세 납부를 금융재산으로 강제할 경우 물려받은 주식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영권 방어가 어려움

○ 현행 제도는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여 상속인 사정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경영권의 포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부(富)와 핵심기술의 핵심기술 해외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상속인의 자금유동성을 담보해주기 위하여 금융재산의 일정비율(예)80%) 이상 상속세를 납부시 물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마련

17.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현 황**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

< 기업규모별 할증평가율 >

구 분	중소기업*	이 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중소기업이 '20.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제외

□ **문제점**

○ 상증세 최고세율 50%에 최대 할증률 30%를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부모로부터 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는 불가능에 가까움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고 65%의 상속세를 낼 경우, 창업주의 지분 100%는 3세대에서 10%로 급감

○ 비상장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할증평가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

* 안경봉, 홍순기,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6, 2013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의 48.6%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자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 의원 검토보고서, 2015.10)

○ 상장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된 상증법상 평가액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승계 후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우려

□ 건의사항

○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1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 **현 황**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하여 생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를 희망함

○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이나 독일처럼 가업승계와 관련된 사전증여에 대하여 가업상속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 현재는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10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후계자 양성을 위해 사전증여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인 5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되므로 큰 부담 없이 확대 가능

□ **건의사항**

○ (사전증여 한도) (현행) 100억원⇒ (건의) 가업상속공제한도 수준으로 확대

19.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 **현 황**

○ 기업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한 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정상거래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기업 30%

□ **문제점**

○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상적인 거래마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과세방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

* 2017년 세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내용

① 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 개정(정상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의 50%, 한계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의 50%),

② 중견기업 범위 축소(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 제외)

- 중견기업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사업 진출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기업경영 도모

○ 제조 중견기업의 40.4%*는 1차 협력사로 급작스러운 원청업체의 발주량 증가 시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주 하청 거래만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려움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비용지원 및 지분참여 등을 통해 2차 협력업체의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왔으나, 하청업체의 방만경영 및 내부관리가 어려워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

○ 또한, 특허 등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경우 거래가 불가피하며 이를 외부거래로 대체할 경우 핵심기술 유출 및 자사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나 최종 통과법안에서 삭제되어 기업현장의 아쉬움이 가중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신산업 진출 등 중견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과세하여 규제로 작용하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 필요

□ **건의사항**

○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 개편 검토

○ 기술적 특성상 불가피한 거래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20.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 **현 황**

○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률을 익금에 불산입

피출자법인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 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100% 미만	50%
	30% 이하	30%
주권 상장법인 외 법인	100%	100%
	50% 초과 100% 미만	50%
	50% 이하	30%

□ **문제점**

○ 피출자법인의 발생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인 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초래

- 대다수의 주요 국가는 이중과세 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대비하여 지분율 요건 충족이 어렵고 익금불산입률도 현저히 낮아 기업경쟁력 약화

<주요국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현황>

국가	지분율 요건	익금불산입률
독일·프랑스·네덜란드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100%
영국	요건 없음	100%
일본	33% 초과 / 5%~33% / 5% 이하	100% / 50% / 20%
미국	80% 이상 / 20%~80% / 20% 미만	100% / 65% / 50%

* 지주회사 설립 및 관련 조세특례,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대기업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제18조의3)'를 통해 높은 익금불산입률(80~100%)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 기준*이 상향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은 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워 규모가 작은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

*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 지주회사 자산기준 강화(1천억원→5천억원),자·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상향 (상장 20%→30%, 비상장 40%→50%)

○ 이중과세 해소를 통해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한 환류효과를 유도하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지주회사 간 조세형평 도모

□ 건의사항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지분율 기준 완화
  (현행) 100% / 30%(50%) 초과 100% 미만 / 30%(50%) 이하 ⇒
  (건의) 100% / 20%(40%) 초과 100% 미만 / 20%(40%) 이하

- 중소·중견기업 익금불산입율 구간 신설

피출자법인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중소·중견기업	그 외 기업
주권 상장법인	100%	100%	100%
	20% 초과 100% 미만	70%	50%
	20% 이하	50%	30%
주권 상장법인 외 법인	100%	100%	100%
	40% 초과 100% 미만	70%	50%
	40% 이하	50%	30%